



익산시 시보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발행자 : 익산시장
발행처 : 비전홍보담당관

선 람	기 관 의 장

【 입법예고 】

- 익산시공고 제2010-1137호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

회 람								
--------	--	--	--	--	--	--	--	--

익산시공고 제2010-1137호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3일

익 산 시 장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가. 2009.3.26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제1호) 지정 및 협약 체결
나. 익산시가 생활, 문화, 근로 환경을 여성친화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여성친화도시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법률적 기반 마련
다. 여성친화도시가 성인지적 관점에서 종합적·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나.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실시 및 평가

(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안 제4조)

(2)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부서에서 책임있게 실시하여야 함(안 제5조)

(3)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 실시(안 제6조)

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내용

- (1) 조성기준의 설정(안 제7조)
- (2)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구성(안 제8조)
- (3) 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안 제9조)
- (4) 성별분리통계 작성(안 제12조)
- (5)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분석 활성화(안 제13조)
- (6) 도시기반시설(안 제14조), 공공이용시설(안 제15조), 주거단지(안 제16조)
- (7) 여성능력개발 효율화(안 제17조)
- (8) 여성의 취업, 창업 활성화(안 제18조)
- (9) 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안 제19조)
- (10)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안 제20조)
- (11)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안 제21조)

라.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안 제22조 ~ 2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여성발전기본법 제6조(적극적 조치)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정책결정과정 및 정치 참여)
- 나. 제정 조례안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0. 8.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익산시장(여성친화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 나. 의견제출할 곳
- 우570-753 익산시 인북로 32길1(남중동) 익산시청 여성친화정책과 (전화 063-859-5345, 팩스 063-859-5073)
-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익산시청 홈페이지 등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여성친화정책과(063-859-534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

제1장 총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기타 여성관련 법령에 따른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주어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도시에서의 성별영향평가”란 시의 제반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4. “도시에서의 성형평성”이란 도시 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 등
 - 나. 공공이용시설 :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등
 - 다. 주거단지 : 단지 조성, 주택 내부 등

제3조(시와 시민의 책무) ①시는 여성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추진·평가하고, 법 및 기타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익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법 및 기타 여성 관련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실시 및 평가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③ 계획의 수립과 평가의 심의를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를 설치한다.

제5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내용

제7조(조성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 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8조(여성친화도시 협의체) 시장은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여성친화도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결정 과정에 성 평등적 시각이 반영되도록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익산시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정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각 부서에서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여성친화정책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평등한 인사관리) 시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여성정책담당부서 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성별분리통계 작성) 시장은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분석 활성화)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과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야 한다.

제14조(도시기반시설) 시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 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4. 직장 가정 양립 환경 조성

제15조(공공이용시설)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3.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제16조(주거단지) 시장은 단지조성, 주택 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다세대 가구, 대가족, 독신가족, 학생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거주 공간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제17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 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의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제18조(여성의 취업, 창업 활성화)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 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가족 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시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역량증진과 마을, 가족,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시장은 시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 관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제22조(설치) 시장 소속하에 익산시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조정·심의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2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익산시 각 국장·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소장·상하수도사업단장·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지원단장·각국 주무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민간 위촉위원을 둔다.

④ 위촉직 위원은 지역 또는 여성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에는 전문직 여성·직장여성·전업주부·영유아 돌봄 여성·소외계층 여성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25조(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촉하는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7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정책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 한다.

제29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토의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30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익산시 여성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 ③(경과조치) 「익산시 여성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010.10.31까지로 한다.
- ④(여성위원 위촉 의무 비율에 따른 경과조치) 제10조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구성·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촉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어 재위촉할 때부터 적용한다.